

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나은 정부</b>
		배포일시	2018. 10. 30(화) 총 6매(본문 6매)	
<b>담당 부서</b>	항공기술과	담당자	· 과장 오성운, 사무관 이석진, 주무관 장해철 · ☎ (044)201-4291, 4785	
	간선도로과	담당자	· 과장 이상헌, 사무관 최규용, 주무관 이장욱 · ☎ (044) 201-3907, 3893	
	시설안전과	담당자	· 과장 이장원, 사무관 이용재 · ☎ (044) 201-4594, 3588	
	녹색도시과	담당자	· 과장 안경호, 사무관 심인보 · ☎ (044) 201-3745, 3746	
	첨단항공과	담당자	· 과장 오원만, 사무관 류나린 · ☎ (044) 201-4315, 4290	
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당자	· 과장 김명준, 사무관 정나선, 주무관 윤성민, 허준 · ☎ (044) 201-4818, 4816	
<b>보도일시</b>		10월 31일(수) 11:00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) 이후 사용		

##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. 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'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성과 및 계획' 참고자료

- ◆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...시험비행·신기술 개발 활성화
- ◆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...폴리머, 플라스틱 등 신소재 활용·성능 강화
- ◆ 시설물 점검용 드론 하도급...비용절감·안전예방·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
- ◆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확대...수목형·잔디형 등 효율적 부지 활용
- ◆ 불법어업·연안관리 등 공공목적 긴급 드론은 사전승인 없이 비행토록 개선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31일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.
- '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'은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으로 인해 신산업·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,
  -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(한정적 개념→포괄적 정의,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)하거나, 규제 유예제도

(샌드박스, 기존규제의 유예·면제)를 통하여 신산업·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【과제①】 《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기준 마련 》

- ▶ **유인드론, 1인승 초경량비행장치(이하 플라잉 보드)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.** -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-

**기존** 8종\* 이외의 초경량비행장치 개발 시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비행 허가기준 불분명 \*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무인비행장치, 회전익 비행장치 등

**개선**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허가요건, 절차기준 신설

☞ **(효과)** 플라잉 보드, 유인드론,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

\*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 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 중

- 현재 미국, 유럽 등 항공선진국은 플라잉 보드 등의 개발에 이어, 도심지에서 사용가능한 개인비행체(Personal Air Vehicle) 연구·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나,
  - 국내는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 등 8종 이외의 새로운 비행장치는 개발 중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비행을 허가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, 연구·개발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.
  -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·개발 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중입니다.

- 연구·개발 중인 새로운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판단기준과 안전한 비행절차를 오는 12월까지 마련(국토교통부 고시 개정)할 계획으로,
- 기술적 판단기준은 설계·제작 기술자료, 지상 성능점검 자료 등을 기반으로 비행장치의 위험도를 평가하고,
- 비행절차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시험비행 장소제한, 단계적 비행시험 등 안전이 확보된 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

**【과제②】 《 다양한 도로포장 재료를 이용한 포장공법 확대 》**

**▶ 아스팔트, 콘크리트 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,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집니다. -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-**

<b>기존</b>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
<b>개선</b> 신소재 포장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 '기타 포장' 카테고리 신설 (도로포장설계고시, '18.11월)
☞ <b>(효과)</b>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연구 및 시장진입 활성화 기대

- 도로포장은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하중에 저항하여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도로 주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데,
- 현재 보도 및 자전거 도로 등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한 시공 사례도 있으나, 일반 도로포장 재료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가능한 상태입니다.
- 이에 일반 도로포장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이 경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도로 포장공법 개발으로 시장확대 및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

**【과제③】 《 시설물 안전점검 산업에 신기술 하도급 허용 》**

**▶ 시설물 점검·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 집니다. - 시설물 점검·진단 시 드론 등 신기술·신제품 활용 허용 -**

**기존**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을 **13개 분야\***로 한정  
 \* 비파괴검사, 지반조사 및 탐사, 수중조사,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

**개선**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'드론 등의 신기술·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' 신설 (시설물안전법 시행령, '19년)

**☞ (효과)** △시설점검 **비용절감\***, △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, △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 
 \* 시설물 점검의 20%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약 12% 비용절감 예상

- 현재 안전점검 시 하도급이 가능한 기술은 비파괴검사, 수중탐사, 지반조사 등 13개 전문기술로 제한되어 있어,
  - 드론 등 신기술은 하도급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, 초기구축 비용이 높아 기존 안전점검업체가 직접 구비하기도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.
  - 하지만, 이번에 제도개선 추진\*으로 하도급을 드론 등 신기술까지 확대하면 안전점검 산업 전반에 걸쳐 신기술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.
- \* R&D 연구결과('16.9~'19.8)를 토대로 안전점검 신기술 활용 절차 및 기준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, 「시설물안전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 개정
- 아울러, 드론 등 신기술 활용시 안전사고가 감소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## 【과제④】 《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 개념 확대 》

### ▶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 개념이 확대됩니다.

**기존**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장사시설로 자연장지\* 중 수목장림형만 규정

\* 장사법 상 자연장지: 수목형, 화초형, 잔디형, 수목장림형

**개선** '자연장지'로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로 전환 허용

☞ (효과)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, 부지의 효율적 활용

-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사 관련시설(공동묘지, 화장시설 등)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,
  - 예외적으로 기존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도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되,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에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·화초형·잔디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가 가능하도록 개선('18.12월 예정)할 계획입니다.

## 【과제⑤】 《 공공목적 드론비행의 원칙적 허용 》

### ▶ 국가, 지자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가능해집니다.

**기존** 군용, 경찰용 또는 세관용에 한하여 무인비행장치(드론) 비행특례\* 적용

\* 비행제한구역, 150m 고도 이상 및 관제구역 등에서 비행 사전승인 등 적용배제

**개선** 불법어업 감독 및 연안관리 등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이 '공공목적'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

☞ (효과) 신속한 드론 활용으로 단속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연안관리 제고

- 현재는 공공목적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비행승인\*으로 인해 적기 활용에 애로가 있어,
  - \* 현재는 비행개시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함
-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 시 유선통보 후 즉시비행 가능하고,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('18.12월 예정)입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이석진 사무관(☎ 044-201-4291, 과제1관련), 간선도로과 최규용 사무관(☎ 044-201-3907, 과제2관련), 시설안전과 이용재 사무관(☎ 044-201-4579, 과제3관련), 녹색도시과 심인보 사무관(☎ 044-201-3745, 과제4관련), 첨단항공과 류나린 사무관(☎ 044-201-4315, 과제5관련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